

대구지방법원 2024. 9. 25 선고 2023나324393 판결 [부당이득금 반환]

재판경과

대구지방법원 2024. 9. 25 선고 2023나324393 판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3. 10. 17 선고 2023가소2167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A

피고, 피항소인B

변론종결 2024. 7. 17.

판결 선고 2024. 9. 25.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3. 10. 17. 선고 2023가소2167 판결

주문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28.부터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대구 동구 C에 있는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 E 합명회사(이하 'E'라 한다)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는 E에서 택시기사로 근무하였고, D에서는 2016. 5. 24.경까지 약 3년간 '택시기사들의 사납금 관리, 차량등록, 배차, 휴업 택시에 대한 행정접수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관리실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5. 5. 22.경 E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대구 동구에 있는 F에 22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매각하였다.

다. 원고는 2016. 6. 28. 대구 달서구 상인동에 있는 식당에서 피고에게 2,2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2020. 8. 7. 피고를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고소하였다. 대구달서경찰서장은 2020. 11. 17.경 '범죄 혐의점을 단정할 수 없고 입증할 자료도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그 사건을 내사종결하였다.

피형의자 피고는 피해자 원고가 운영하는 E와 D에서 관리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차량등록, 사납금 등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가. 업무상횡령

1) 피형의자는 2014. 9. 30.경 교통사고로 인하여 운행하지 못하게 된 E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를 경북 성주군 G 이하 불상의 폐차장에 폐차한 후 시가 불상의 폐차대금을 회사에 입금하지 않고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피형의자는 2015. 5. 22.경 진정인이 매각하라고 맡긴 이 사건 차량을 대구 동구에 있는 F에 매각한 후 그 대금 200만 원을 회사에 입금하지 않고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나. 공갈

피혐의자는 2016. 6.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 차고지에서 피해자가 피혐의자를 해고시키려고 한다면 '날 해고시키면 내가 가만히 있겠나, 사납금 받은 것을 고발해서 회사에 박살내겠다'고 겁을 주었다.

피혐의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대구시청에 고발 당할 것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6. 6. 28.경 대구 달서구 상인동 이하 불상의 식당에서 현금 2,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15. 5. 22.경 이 사건 차량을 매각하고 받은 대금 200만 원을 E에 입금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또한, 피고는 원고가 부당노동행위로 고발을 당하여 재판을 받는 등 다수의 민·형사 사건으로 시달리고 있던 중 회사의 기밀서류를 가지고 퇴사하였고, 이후 그 서류로 원고를 고발(전액관리제가 아닌 사납금제로 운영하였다는 혐의 등)한다거나 이를 노동조합 측에 전달한다는 취지로 원고를 협박하여 2016. 6. 28. 원고로부터 2,200만 원을 갈취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의 반환으로 원고에게 2,4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앞서 든 증거, 을 제4,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가 이 사건 차량을 매각한 대금 20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고 원고를 협박하여 원고로부터 2,200만 원을 갈취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피고는 2010년경 원고와 알게 되어 그 무렵부터 원고가 운영하였던 D, E 등 회사에서 택시기사, 관리실장 등으로 근무하면서 원고가 지시하는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였다. 원고는 피고가 퇴사하고 피고에게 2,200만 원을 지급한 이후에도 회사 소속 근로자와의 퇴직금 분쟁 해결을 위한 중재 역할을

부탁하였고, 실제로 피고는 어느 정도 그 역할을 담당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② 원고가 피고를 업무상횡령 등 혐의(이 사건 차량을 매각한 대금 200만 원을 횡령하였고, 2016. 6. 28. 원고를 협박하여 2,200만 원을 갈취하였다는 혐의 포함)로 고소하였으나, 입증할 자료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모두 내사종결되었다.

③ H(D에서 전무이사로 재직한 사람)가 작성한 서술서(갑 제10호증)에 기재된 '2016. 6.경 피고의 협박 내용'도 당시 원고로부터 전해 들었다는 취지에 불과하고, 오히려 H는 이 법원에 '피고는 원고를 협박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을 제5호증의 1)를 제출하였다.

④ 원고는, 2015. 5. 22.경 피고가 단독으로 자동차상사에 가서 이 사건 차량을 매각하고 그 대금을 수령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에 대해 피고는, 당시 원고가 이 사건 차량을 매각하는 데 동행할 것을 요구하여 함께 자동차상사에 갔고 차량 매각대금은 원고가 자동차상사를 운영하는 I과 결산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H는 사실확인서에 "이 사건 차량은 E 소속 차량으로 그 차량을 매도하기 위해서는 회사의 매도용 인감증명서가 필요한데, 당시 법인인감 등은 원고가 직접 관리한 것으로 기억하고, 피고는 원고가 지시하는 업무를 처리하였다"는 취지로 기재하였는데, 이는 피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내용이다.

2)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판사이규철

판사김준철

판사김승섭